

<p>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p>	<p>○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호에 따른 의사 면허 취소</p> <p>- 의사 장문기는 의료인이 아닌 정*우, 정*과 공모하여 2006.1.경부터 2011.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0-1, 마리아성모요양병원'과 2012.5.1.부터 2013.2.7.까지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24, 다나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한후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 재정 및 경영은 정*우가 책임지고 정*이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음. 또한 의사 장문기는 정*웅, 정*우, 정*과 공모하여 '서울 송파구 송이로 111, 나눔요양병원'에서 2013.2.7.경부터 2013.5.경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p>
<p>처분관련 법적근거</p>	<p>○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4., 2013고단 3527-1, 5734-1(병합))</p>
<p>주의사항</p>	<p>○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p>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910호**

● **법무부공고제2020-343호**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각 지자체(시·군·구) 지하수 담당 부서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